

# 서울고등검찰청

(530-3114)

2006.

수 신 이 수 정 귀하

발 신 서울고등검찰청

제 목 항고사건처분통지

검 사 정 선 태



구근회의 24명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처 분	①사 건 번 호	2006 불항 제 4428호
	②연 월 일	2006. 6. 23.
	③결 과	항고기각
이 유	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이유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,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	
비 고	○ 본 항고사건은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(검찰청법 제10조 제2항)를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항고장을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	